

## 충청북도의료취약지구내의료시설에대한도세과세 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(안)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1년 12월 21일

나. 회부일자 : 1991년 12월 23일

### 3. 제안이유

○ 적용시한이 만료됨에(1991. 12. 31) 따른 시한연장임.

○ 목적 : 의료시설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민간병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.

### 4. 주요골자

○ 정부의 의료취약지구 및 인력보강대책에 의하여 선정된 지역에서

○ 병원설립자로 지정된 자의 건축물과 부속토지, 환자수송용 자동차에 대하여  
취득세, 등록세 면제

### 5. 검토보고

○ 정부의 의료취약지구 의료시설 및 인력보강대책에 의하여 선정된 지역(영  
동군, 진천군, 단양군 관할지역)안에서 병원설립자로 선정된 자가 병원용건  
축물 및 그 부속토지와 환자수송용 자동차를 취득·등기할 때에는 취득세  
와 등록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본 조례의 시행기간이 1991년 12월 31일로  
만료됨에 따라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의료시설이 취약한 농어촌지역  
에 민간병원의 유치를 촉진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도록 하기 위하여 충청  
북도의료취약지구내의료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개정시행함이  
타당하다고 사료됨.